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2
------------	-----

발의연월일 : 2016. 7. 12.

발 의 자 : 조경태 · 이종배 · 윤상현

김명연 · 유재중 · 김광림

정갑윤 · 김승희 · 주승용

이현재 · 박주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침해현황 실태 조사
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설정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등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로,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범위”를 “범위”로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 청장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등에</u>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① ----- -----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신 설>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신 설>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신 설>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신 설>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범위----- -----.